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nn8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및 개정 사항 반영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규정(안 제28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위임근거법령 변경(안 제32조)

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토석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안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 규정(안 제40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안 제64조)
-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기준면적 변경(안 【별표 1】)

## 3. 조례안 : 붙임 참고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3)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4) 「초지법」
-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6)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에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32조제5항에“영 제35조제3항에”를“영 제35조제2항에”로 한다.

제40조제7항에“자”를“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에“재산가액의”를“재산가격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사의 면적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 구분             | 면적                   | 비고                                                                                                                          |
|----------------|----------------------|-----------------------------------------------------------------------------------------------------------------------------|
| 본청 청사의<br>기준면적 | 14,061m <sup>2</sup> |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br>되, 지하주차장 및 주차시설 면적, 주민편<br>의에 사용되는 면적, 법령에 따라 의무적<br>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및 군 외의<br>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 의회 청사의<br>기준면적 | 2,581m <sup>2</sup>  |                                                                                                                             |
| 군수 집무실<br>기준면적 | 99m <sup>2</sup>     |                                                                                                                             |

※ 문화·복지·체육시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br>① <u>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br><br>② ~ ③ (생 략)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br>① <u>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br>① ~ ④ (생 략)<br>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br>1. ~ 6. (생 략)<br>7. <신 설><br><br><br>8. <신 설>                                    | 제28조(대부료의 요율)<br>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br>-----.<br><br>1. ~ 6. (현행과 같음)<br>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br>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 현행                                                                                                                                                                                                                                                                                                                                                                 | 개정안                                                                                                                                                                                                                                                                                                            |
|--------------------------------------------------------------------------------------------------------------------------------------------------------------------------------------------------------------------------------------------------------------------------------------------------------------------------------------------------------------------|----------------------------------------------------------------------------------------------------------------------------------------------------------------------------------------------------------------------------------------------------------------------------------------------------------------|
| <p>9. &lt;신설&gt;</p> <p>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p> | <p>9.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u></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r/>① ~ ④ (생략)<br/>⑤ 영 제1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p> | <p>⑤ (삭제)</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r/>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 영 제35조제2항에 -----<br/>-----<br/>-----<br/>-----<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r>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br>1. ~ 6. (생략)<br>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r>-----<br>-----<br>-----<br>1. ~ 6. (현행과 같음)<br>7. -----<br>-----<br>-----<br>-----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br>① (생략)<br>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br>가. ~ 나. (생략)<br>2. (생략)<br>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br>③ ~ ④ (생략)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br>① (현행과 같음)<br>1. -----<br>-----<br>----- 재산가격의 -----<br>-----<br>가. ~ 나. (현행과 같음)<br>2. (현행과 같음)<br>② -----<br>-----<br>지급한다.<br>③ ~ ④ (현행과 같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 구 분         |                      | 기 준 면 적  |
|-------------|----------------------|----------|
| 특 별 시       |                      | 127,402㎡ |
| 광<br>역<br>시 |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 68,333㎡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52,784㎡  |
|             | 인구 200만명 미만          | 37,563㎡  |
| 특별자치시       |                      | 35,383㎡  |
| 도           | 경기도                  | 77,633㎡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 44,974㎡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43,376㎡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 39,089㎡  |
| 특별자치도       |                      | 32,223㎡  |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 구 분 |                     |                    | 기 준 면 적 |
|-----|---------------------|--------------------|---------|
| 시   | 인구 10만명 미만          |                    | 11,893㎡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                    | 13,965㎡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                    | 17,759㎡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 18,907㎡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                    | 19,098㎡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                    | 20,214㎡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 21,968㎡ |
|     | 인구 100만명 이상         |                    | 22,319㎡ |
| 군   | 도의 군                | 인구 3만명 미만          | 7,525㎡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8,385㎡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9,406㎡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1,829㎡ |
|     |                     | 인구 15만명 이상         | 13,582㎡ |
|     | 광역시의 군              | 인구 10만명 미만         | 11,861㎡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2,020㎡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14,061㎡ |
|     |                     | 인구 50만명 이상         | 18,206㎡ |
| 자치구 | 특별시의 자치구            | 인구 50만명 미만         | 26,368㎡ |
|     |                     | 인구 50만명 이상         | 27,484㎡ |
|     | 광역시의 자치구            | 인구 10만명 미만         | 11,861㎡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2,020㎡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14,061㎡ |
|     |                     | 인구 50만명 이상         | 18,206㎡ |

비고

-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구 분 | 특별시,<br>광역시, 특별<br>자치시, 도 및<br>특별자치도 | 시             |                   | 군   | 자치구 |
|-----|--------------------------------------|---------------|-------------------|-----|-----|
|     |                                      | 행정구가<br>설치된 시 | 행정구가<br>설치되지 않은 시 |     |     |
| 면 적 | 165.3㎡                               | 132㎡          | 99㎡               | 99㎡ | 99㎡ |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 구 분         |                      | 기 준 면 적 |
|-------------|----------------------|---------|
| 특 별 시       |                      | 24,930㎡ |
| 광<br>역<br>시 |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 11,054㎡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7,291㎡  |
|             | 인구 200만명 미만          | 5,174㎡  |
| 특별자치시       |                      | 4,889㎡  |
| 도           | 경기도                  | 29,164㎡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 12,700㎡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11,524㎡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 9,878㎡  |
| 특별자치도       |                      | 8,467㎡  |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 구 분 |                     | 기 준 면 적            |        |
|-----|---------------------|--------------------|--------|
| 시   | 인구 10만명 미만          | 1,853㎡             |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 2,257㎡             |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 3,351㎡             |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3,429㎡             |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 4,713㎡             |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 4,851㎡             |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6,209㎡             |        |
|     | 인구 100만명 이상         | 6,597㎡             |        |
| 군   | 도의 군                | 인구 3만명 미만          | 1,358㎡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1,506㎡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1,787㎡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830㎡ |
|     |                     | 인구 15만명 이상         | 1,996㎡ |
|     | 광역시의 군              | 인구 10만명 미만         | 1,358㎡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698㎡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2,581㎡ |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 자치구 | 특별시의 자치구            | 인구 50만명 미만         | 2,961㎡ |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     | 광역시의 자치구            | 인구 10만명 미만         | 1,358㎡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 1,698㎡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2,581㎡ |
|     |                     | 인구 50만명 이상         | 4,172㎡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산지관리법

###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